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26 선고 2021가합101579(본소), 2022가합100290(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고B

피고(반소원고)C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양석준

변론 종결2023. 4. 21.

판결 선고2023. 5. 26.

주 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12.2/188.14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7. 10.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C'이라 하고, 피고 B와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주문 제1항과 선택적으로 2015. 4. 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18/1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중 1,807/10,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E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장남), 피고 B(차남), 피고 C(삼남)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E은 안양시 만안구 F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1) (이하 위 건물을 'G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안양시 만안구 H, I, J 토지(차례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1동(이하 'K건물 L동'이라 한다)과 집합건물 1동(이하 'K건물 M동'이라 하고, K건물 L동과 통틀어 'K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347.757/912.2 지분은 K건물 M동의 대지권으로登記되어 있다.

라. 망 E은 2015. 4. 1. 사망하였다. 망인은 남편인 망 E이 사망하자, 망 E에 대한 상속 문제, 망인 사망 시 발생할 상속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들이 망 E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정해두길 원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원고와 피고들과 상속받을 재산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7.경부터 2015. 7. 3.경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상속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15. 6. 17.

- 피고 B: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 원고: 처음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받아들이기로 합의 했잖냐. 지금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둘째가 G건물을 받을지 안 받을 것인지만 결정하라고 하신 것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하신다.

■ 2015. 6. 18.

- 피고 C: 제가 파악하는 어머니의 생각은 K건물 L동, M동, G건물을 형제들에게 각각 분배하는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G건물은 당장 상속을 해야 하고 K건물은 어머니가 훗날 상속하는 것이니 지금 언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중략)

- 원고: 우리가 사인하고 약속한 그 날을 벌써 잊었냐?
- 피고 C: 그 종이는 그 날 찢어지고 그 이후 여러 말들이 오갔어요

(중략)

- 원고: 기억이 안 난다니 다시 얘기해주마. 그 날 결정된 사항은 K건물 원고, G건물 피고 B, 현금 6억 원 피고 C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해왔고. 넌 보험으로 받겠다고 해서 어머니랑 같이 상담도 했고

(중략)

- 피고 C: 제가 그것에 동의했나요? 종이를 찢어버린 것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지금 같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나눈 것도 아니고

(중략)

- 피고 C: 보험 건입니다. 어머니와 FP와 상담한 얘기입니다. 월 보험료는 400 이고 5년 납입입니다.

■ 2015. 6. 19.

○ 피고 C: 형이 분명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셨지요.

○ 원고: K건물 원고, G건물 피고 B, 현금 6억 원 피고 C이지

○ 피고 C: 지금 그건 다시 논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략)

○ 피고 C: 말씀 드린 대로 어머니의 뜻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분배하는 것까지 와 계십니다.

■ 2015. 6. 20.

○ 피고 C: 제가 건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건 제가 돈도 없고 상황도 그렇고 해서 었습니다.

(중략)

○ 피고 B: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머니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다오

○ 피고 C: G건물은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K건물은 두 분이 나오시는 시점에서 정리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 피고 B: 아직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중략)

○ 피고 C: 제가 G건물에 대한 말씀 드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요청금액: 4.8억 (G건물 월세 자체 적립 2~2.5억 포함)

- 목표기간: 10년 또는 K건물 상속 시점까지

○ 피고 C: 이 부분은 작은 형이 말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확실히 결정하고 드리는 말이라 이 금액들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 피고 B: 원래는 어머니가 3억 8천을 얘기하셨지. 배경은 이렇다. 그 소동이 있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두 아들에게 6억씩 12억을 마련하시기 어렵다고 나에게 G건물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G건물을 현 상태로 받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어머니는 그럼 K건물 M동을 말씀하셔서 형도 나도 불편할 수 있으니 M동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서 G건물을 취하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다. M동과 비교하면 보증금, 월 임대료, 재산권 행사가능성 등을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을 거다.

■ 2015. 7. 2.~2015. 7. 3.

○ 피고 B: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었고 혼선도 있었지만 이제 서류 준비도 시작되고 해서 관련 사항을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삼형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기본 원칙에 대해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의 몫에 대해서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건물에 대한 분배는 원고: K건물 L동, 피고 B: K건물 M동, 피고 C: G건물. 또한 이 분배에 대한 원칙은 설령 예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 피고 B: 형님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동의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명확하게 의견을 내주세요. 그래야 동생들이 형의 의견을 제대로 판단하고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원고: 동의하지

(중략)

○ 피고 C: 건물 분배에 대한 얘기는 작은형이 말하신 대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G건물에 대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중략)

○ 피고 B: 그럼 오늘 결론은 삼형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다음의 기본 원칙에 대해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의 몫에 대해서 존중하고 보장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분배는 원고: K건물 L동, 피고 B: K건물 M동, 피고 C: G건물. 이 분배에 대한 원칙은 설령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지킨다.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 피고 C: 동의합니다.

○ 원고: 동의

○ 피고 B: 좀 거친 말들이 오갔지만 수고들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죠.

바. 망인은 2015. 7. 10.경부터 피고 C에게 매월 4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사. 망인과 원고, 피고들은 피고 C이 G건물을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15. 8. 20.경 G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B은 2015. 8. 10.경 원고에게 망인의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자: 망인

유언사항: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장남 원고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 K건물 L동에 해당하는 지분
- K건물 L동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2. 차남 피고 B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 K건물 M동에 해당하는 지분
- K건물 M동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3. 삼남 피고 C은 망 E의 건물(G건물)을 기 단독 상속받은바 향후 5년간(기간: 2015년 7월~2020년 7월) 매월 400만 원을 증여한다.

자. 이후 망인은 일자불상경 자필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다만 이 사건 유언장은 사본만 존재할 뿐 원본은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유언장의 서두에 망인의 주소,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일자는 2015. 4. 5.로 기재되어 있다.

유언장

유언사항: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이 유언장은 자식들의 상속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상속 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 형제 간에 유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2. 장남 원고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 K건물 L동에 해당하는 지분
- K건물 L동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3. 차남 피고 B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 K건물 M동에 해당하는 지분

- K건물 M동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4. 삼남 피고 C은 망 E의 건물(G건물)을 기 단독 상속(중간 부분 확인이 어려움) 매월 400만 원을 증여한바 K건물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지 말 것

차. 망인은 2020. 11. 1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3, 27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갑 제8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작성한 문서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망 E이 사망하자 망 E과 망인의 상속재산 분배를 정해두길 원하였다. 망인은 원고가 K건물 L동을, 피고 B이 K건물 M동을, 피고 C이 G건물을 각각 상속받길 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뜻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5년 8월경 자필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내용과 같이 유증을 하였거나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인증여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K건물 L동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망인의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 유언은 작성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단독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민법 제1060조),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자필증서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유언장이 민법 제1066조2)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으로 전자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본은 자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유언장(갑 제8호증)은 전자복사기 등을 이용한 복사본으로 원본의 존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1쪽 하단의 일부마저 가려져 복사되어[다만, 가려진 부분의 형상과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 B이 작성하여 수정한 유언장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려진 부분은 "받은바, 향후 5년간(기간: 2015년 7월~2020년 7월)"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전문이 자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능력의 판단, 복수 유언이 있는 경우의 처리 등을 위해 작성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작성일자가 2015.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작성일자는 그 이후로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바, 작성 연월일이 특정할 수 있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인증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내용과 같이 사인증여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장 내용과 같이 재산을 사인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다만 실제 작성일 이전에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 끝에 망인에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하여,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유언장과 같은 내용으로 재산을 사인증여하는 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망 E 사망 후 망인의 뜻에 따라 망 E와 망인의 재산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당초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원고가 K건물을, 피고 B이 G건물과 현금 4억 8,000만 원을, 피고 C이 현금 6억 원을 받는 방식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망인이 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이 K건물과 G건물을 나누어 갖길 희망하였다. 피고 C은 G건물을 받는 대신 일정액의 현금을 보험금 납입의 방법으로 받길 원하였고, 망인과 보험금(월 400만 원)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피고 C은 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형제들에 비해

망인과 교류가 잦았는데, 원고와 피고 B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며 원고와 피고들이 K건물과 G건물을 나누어 갖길 희망하는 망인의 뜻을 전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 끝에 2015. 7. 3.경 망인의 뜻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② 망인은 원고와 피고들이 2015. 7. 3.경 합의한 이후인 2015. 7. 10.경부터 피고 C에게 매월 400만 원씩을 송금하고, G건물에 관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2015. 7. 3.경 합의 내용이 망인에게 전달되었고, 망인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3.경 합의한 이후 G건물에 관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들은 2015. 8. 10.경 망인의 유언장 초안과 수정본을 작성하여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과 동일한바, 원고와 피고 B이 작성한 유언장이 망인에게 전달되었고, 망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의 처는 2018. 7. 22.경 망인에게 이 사건 유언장 내용과 같이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피고들의 불만이 없었냐는 취지로 물었고, 망인은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⑤ 원고와 피고들이 2015. 7. 3.경 합의한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5.(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들 사이의 의사합치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늦어도 망인이 원고와 피고들의 2015. 7. 3.경 합의에 따라 피고 C에게 매월 40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한 2015. 7. 10.경에는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인증여 약정 일자를 2015. 7. 10.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귀국하여 망인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가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사인증여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망 E과 망인의 재산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망인을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귀국하여 망인을 모시고 사는 것을 전제로 K건물 L동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망인이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K건물 L동에 관한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유언장을 찢어버려 사인증여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와 피고들이 K건물을 포함해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씩 나누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을 1/3 지분씩 나누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장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들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갑 제18호증, 제22호증, 을 제5호증 참조). 또한 원고와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1/3 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망인 사망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 문제에 대한 다툼이 생겨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1/3 지분씩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설령 사인증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K건물 L동 부지, M동 부지, L동과 M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지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K건물 L동의 부지만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K건물 L동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부지로 삼고 있는 반면, K건물 M동은 이 사건 토지 중

347.757/912.2 지분만 대지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망인은 당초 원고에게 K건물 전체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K건물 M동의 대지권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 및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2015. 7. 10.경 이 사건 유언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K건물 M동의 대지권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46.4433) /912.2 지분 중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인 각 188.1474) /912.2 지분에 관하여, K건물 L동에 관하여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인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7. 10.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망인의 사인증여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여 피고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 C은 2015. 7. 10.경 망인의 사인증여를 알았다고 봄이 명백하다. 피고 C이 설령 이 사건 유언장의 원본 내지 복사본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 C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이 사망한 2020. 11. 16.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2. 1. 18.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선희

판사이희수

판사김수민

별지

1) 11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그 중 망 E이 소유한 9세대의 구분소유 건물

2)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3) = 912.2 - 347.757

4) = 546.443 × 1/3(법정상속분)